산학연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필수 확인사항

01 전략물자·기술이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내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양에 따라 전략기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술

- 화학 분야 : 내부식성 열교환기, 밸브류, 펌프 류, 반응기, 탱크, 합성원료 등
- 생물 분야 : 병원성 미생물, CFF(cross-flow filtration equipment), 동물건조기, 발효조 등
- 철강소재 분야 : 초전도재료, 분말금속 연료, 유기섬유, 탄소섬유, 광학소재, 복합재료 등
- 소재가공 분야 : CNC machine, 로봇, 측정장비 등
- 전기·전자 분야 : 전력공급기, 충·방지 발생시스템, 대용량 전지, IC, wafer, 반도체 생산시험장비, 마이크로웨이브 소자, 전력반도체, 변환기 등
- 컴퓨터 분야 : 하이퍼리드 컴퓨터, 데이터 가록기, 항공데이터시스템 등
- 통신 분야 : 광섬유, 원격통신장비, 전파방해 장치, 정보보안 시스템 등
- 센서·레이저 분야 : 광센서, 레이저, 레이더, 광학기기, 특수카메라 등
- 항법 분야 : 관성항법 장치, 위성항법 시스템, 미사일 유도장치, 비행관리시스템 등
- 해양 분야 : 잠수정, 음파탐지 시스템, 해양 음향 시스템, 수중용 카메라 로봇 등
- 항공 분야 : 로켓, 가스터빈엔진, 풍동, 인공위성, UAV, 진동시험장치 등
- 원자력 분야 : 핵연료 물질, 인조흑연, 가스원심분리기 등

02 기술이전이란?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상기 전략기술을 유·무상에 관계없이 ①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②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발생 시 반드시 학내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3 기술이전의 형태는?

설계도, 사양서, 매뉴얼, 실험자료, 시제품 관련자료 등을 보고서, 이메일, CD, USB 등의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이전)할 경우 전략물자·기술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록매체가 아니더라도 기술지도 및 작업지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고려대상입니다.

04 전략물자기술 관리 제외대상은?

- 기초 과학 연구 관련
-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일반에 공개된 것(논문 등)
-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05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수출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자, 수출허가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다음의 벌칙이 가해집니다.

-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금액 하는 물품 가액의 5배의 벌금
- 교육명령 : 최소 3시간 이상의 전략물자교육 이수 명령

06 연구활동 착수 또는 기술 이전 개연성 발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학내에서 개발한 비상업적 소스코드 또는 기술정보 등을 소지하고 해외 이전을 목적으로 여행할 계획이 있는가? — YES / NO
- 학내에서 개발한 비상업적 소스코드 또는 기술정보 등을 국내외국인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 YES / NO
- 본인이 소유한 소스코드, 기술정보 등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가? (전략물자수출 입고시 별표 2 및 3 참조) — YES / NO
- 전략물자수 출판의 예외에 상에 해당하는가? — YES / NO

YES → 수출관리 대상입니다.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NO → 수출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02)6000-6464 juju8488@kosti.or.kr